

제 목	국 문	한국 성인 남성 고정상혈압자의 발생률 및 정상혈압자에 대한 상대위험도		
	영 문	A Incidence rate and relative risk for the high normal blood pressure groups in Korean mal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배종면 ¹ , 이무송 ² , 김동현 ³ , 신명희 ⁴ , 노준량 ⁵ , 안윤옥 ⁶ ¹ 충북의대 예방의학 ² 울산의대 예방의학 ³ 한림의대 사회의학 ⁴ ⁴ 삼성의료원 건강의학센타 ⁵ 청주리라병원 일반외과 ⁶ 서울의대 예방의학		
	영 문	Jong-Myon Bae ¹ , Moo-Song Lee ² , Dong-Hyun Kim ³ , Myung-Hee Shin ⁴ , Joon-Yang Noh ⁵ , Yoon-Ok Ahn ⁶ ¹ Chungbuk Natl. Univ. ² Ulsan Univ. ³ Hallym Univ. ⁴ Samsung Medical Center ⁵ Chungju Rira Hosp. ⁶ Seoul Natl. Univ.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배 종 면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 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input checked="" type="radio"/>), 연구중 (<input type="radio"/>)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한국인 성인에서 약 10%의 유병률을 갖고 있는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어, 무엇보다도 발병 이전의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일차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고혈압 가족력, 소금 과다섭취, 비만, 운동량 부족, 과음과 함께, '고정상혈압군' (High-normal blood pressure)일 경우 일차예방의 조치를 권하고 있다. Framingham Heart Study에서 26년간 관찰결과 초기 확장기 혈압이 85에서 89 mmHg인 '고정상혈압'인 경우 85 미만의 '정상혈압군'에 비해 고혈압 발생 상대위험도(RR)가 남성 2.25, 여성 1.89로 보고되었다. 이에, 한국 성인 건강 남성에 있어서 (1) 고혈압 발생률을 산출하면서, (2) '정상혈압군'과 '고정상혈압군'간의 상대위험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입하여 1990년도에 공단에서 매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건강검진상 정상으로 판정된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54,378명중에서 근무기관 단위로 계층화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한 세차례 설문조사에 응하여 준 14,533명의 '서울코호트' 구성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서 1992년 정기건강검진시 수축기 측정혈압치가 140 미만, 확장기 혈압치 90 미만이면서, 고혈압 과거력을 부인한 8,870명에 대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까지 외래 및 입원 수진내역을 이용하여 고혈압 발생여부를 추적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 8,870명의 추적관찰 17,265 인-년(person-year)동안 총 313명이 새로 고혈압 환자로 진단되어서 발생률은 연간 천명당 18.13명으로 나왔다. 한편, 연구 대상자들은 확장기 혈압 85 mmHg를 기준으로 ‘정상혈압군’ 8,788명과 ‘고정상혈압군’ 82명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이들의 추적관찰기간은 각각 17,106; 159 인-년동안 환자발생이 각각 310명, 3명이었다. 이에 따르면 ‘정상혈압군’과 ‘고정상혈압군’의 발생률은 연간 천명당 18.12와 18.86으로; 고정상혈압에 따른 상대위험도는 1.04 (95% CI: 0.33, 3.24)로 유의한 발생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고찰

한국 성인 건강남성의 고혈압 발생률은 연간 천명당 18.13명이며; ‘고정상혈압군’과 ‘정상혈압군’간의 상대위험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소견이다. 이는 추적관찰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발생대상자 수가 적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로, 대상자 대부분의 혈압 측정치는 일회에 걸쳐 얻어진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혈압 측정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질병발생의 추구 관찰을 진료비 청구자료에만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선 향후 의무기록 확인조사등의 추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겠다.